

# 대법원 양형위원회 5차 심포지엄 후기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윤 군

## I. 머리말

소설(小雪)이 지나 어느덧 겨울에 접어드는 11월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5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COVID-19 확산으로 평소에는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해서 참여할 기회도 못 얻었을 터이지만 비대면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덕분(?)에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경위는 학교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통해서였는데, 마침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1학년 후배와 함께 방청을 신청하였다.

각설하고, 심포지엄은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약 4시간 동안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각각 산업재해와 양형,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순서는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 양형연구회 이용식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계, 재야·재조 법조계에 종사하는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글의 주 대상은 본과 학부생들이기 때문에 양형의 개념, 양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쟁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것을 순서로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학우들에게 이번 논의가 결코 경찰과 무관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며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독려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다만,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쟁점에 관해서는 필자의 배움과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의 의견을 곡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간략히 쟁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 II. 양형

### 1) 양형의 개념

형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정형은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범죄 구성요건에서의 형벌을 의미하고(예컨대, 징역 5년 이상 등), 처단형은 정해진 법정형에 형법 제56조에 따른 가중·감경의 순서에 따라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처단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의 과정을 거친 후에 형이 선고되는 것을 선고형이라고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양형은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형법 제56조 6호)에 따라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형법 제51조 각호)을 말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이 있다.

법관은 헌법상 양심에 따른 재판과 독립된 재판(헌법 제103조)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1항)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형을 선고함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양형시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양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형위원회규칙」에 따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양형위원회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의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관이 양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여기서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하고 각각 감경, 가중요소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참조)

## III. 양형위원회의 역할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관련된 양형정책을 심의·연구(양형위원회규칙 제2조 1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 1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원회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설정된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고(동법 제6조 1항),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동법 제6조 2항)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법감정과 합리적인 법리에 합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양형기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이 매년 1회 개최되는 양형위원회 심포지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포지엄에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타 행정부처의 직원 등이 참여하여 그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에 노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 IV. 제5차 심포지엄에서의 쟁점

이번 5차 심포지엄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대강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 1) 제1세션 : 산업재해와 양형

제1세션에서는 산업재해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는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고 한다.)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어떻게 수정할지 토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사업주와 도급인 사이의 관계 설정, 안전의무위반과 관련된 가중·감경요소에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이래 지금까지 인재(人災)가 있었다. 현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한국’을 기조로 건설 등 안전사고가 많은 분야에 대해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1세션에서 인상깊은 논의는 산안법상 위반 범죄에 있어 하청을 맡긴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지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현장 노동자의 과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타당성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전사고에서 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항상 현장 노동자이며 현장 노동자의 대부분은 흔히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상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지 한 가족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또한 안전사고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경각심을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심어줌으로써 재발 방지 및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적절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주제였다.

## 2) 제2세션 : 기업범죄의 양형

제2세션에서는 기업범죄의 양형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잇따르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 바로 ‘준법장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준법감시인, 2010년 이후 준법지원인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중요기업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할 때 준법장치를 기업 자체적으로 도입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중, 감경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 세션의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준법장치 도입 사례, 이론, 미 연방대법원 판례, 비평 등을

검토하면서 과연 미국식 준법장치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여기서 다수의 패널들이 동의한 부분은 기업의 준법장치의 도입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법장치의 본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을 국가가 아닌 해당 기업에 넘길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장치 미도입을 기업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며 준법장치 도입 여부를 감경, 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인상깊었다.

## IV. 마치며

이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5차 심포지엄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를 대략적으로 다루었다.

필자의 지식과 필력이 부족함에도 양형의 개념, 양형위원회의 역할 등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양형위원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찰을 꿈으로 삼을텐데, 위에서 다룬 주제가 결코 경찰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상기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반 지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을 독려해주신 이수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